

##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-00호

「회전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(고시)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6월 2일

국토교통부장관

### 회전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

#### 1. 개정 이유

최근 민간 헬리콥터 사고와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헬리콥터 안전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위험 경감 및 안전운항 확보를 위한 안전대책 일환으로 산불진화, 외부화물 적재운항 등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조종사에 대한 교육훈련을 강화하려는 것임

#### 2. 주요 내용

가. 유효기간을 2026년 4월 30일로 변경함(안 1.1.2.1)

나. 산불진화, 외부적재 화물운송 등 특수임무에 대한 정의 신설(안 2.1)

다. 항공기사용사업자에게 신입 헬기조종사를 특수임무에 투입하기 전 초기비행훈련을 이수하도록 하고, 기존 조종사에는 12개월 주기로 특수임무 수행을 위한 정기교육훈련을 이수하도록 함(안 7.2.8.A, 7.2.14 및 안 별표 7.2.14)

라. 항공기사용사업자는 외부적재 화물운항 시 지상의 현장안전유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업무에 투입하도록 함(안 9.1.6)

마. 항공운송사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설정된 항공사 절차 기본교육을 완화(40→32시간)하고, 항공운송사업 경력자에 한해서만 기본교육을 20시간으로 단축하였으나, 타 사용사업체 경력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(안 별표 7.2.2)

### 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항공운항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<http://molit.go.kr>→정보마당→법령정보→입법예고·행정예고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성명(기관, 단체의 경우 그 기관, 단체명과 부서명, 직급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나.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(찬·반 의견과 이유)

개정안	수정안	의견

다. 의견 보내실 곳

- 1) 소속 : 국토교통부 항공운항과
- 2) 주소 :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(정부세종청사 6동)
- 3) 전화/팩스 : 044-201-4260 / 044-201-5629
- 4) 이메일 : mjkim33@korea.kr